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9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3
2. 경미한 과실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근거 마련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염태영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22.
3. 회 부 일 : 2026.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 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또한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경우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의 비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¹⁾²⁾.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제한을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운용 재량을 확대하되, 운영비 교부 한도를 사업비의 100분의 15 범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함)이 국고보조금의 운영비 명목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1)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비 목적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지방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무관하게 특정 법인·단체 등의 유지를 위해 집행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범위”가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면서 운영비 목적의 지방보조금 교부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뿐만아니라, 법제적 측면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라는 한도가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을 합산한 운영비 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 비목별 상한을 의미하는지 그 적용 대상이 모호해 향후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보조금법 시행령」³⁾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드는 경비가 아닌

3)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경우 보조금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운영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운영비 지원 수요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

4) 또한, 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으로부터 운영비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며, 개정안의 법문언이 모호하여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소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2. 경미한 과실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경미한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부 결정 취소를 대신하여 시정명령 등 감경된 처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

② (생 략)	<u>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①지방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③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⁵⁾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

5) 이는 대체적으로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⁶⁾,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추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⁷⁾.

6)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처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으면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음에도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경미한 과실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경미한 과실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한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다 감경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착오와 같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⁸⁾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⁹⁾ 이후 지

8)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의 달성에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의 달성에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9)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교부결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¹⁰⁾¹¹⁾ 개정안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일부취소처분과 시정명령을 병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석되므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만 부과하려는 취지라면 법 문언을 이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단,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교부결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¹²⁾ 경미한 과실에 대해 교부결

10) 「지방보조금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2)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할 것임.

한편, 「보조금관리법」 또한 보조사업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교부취소 처분은 보조금 교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행위로, 각각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교부취소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입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3) 「보조금관리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337